

#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양승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16.

발의자 : 양승조 · 정춘숙 · 김정우

신창현 · 인재근 · 안호영

전혜숙 · 이용주 · 김해영

이학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정신보건법」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정신보건법」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3제1호 본문 중 “「정신보건법」”을 “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의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다.</p> <p>1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37조의3(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.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